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4가합56939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1. 미합중국인 A

2. 미합중국 법인 비지네스크레딧매니지먼트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5. 9. 3.

판결 선고2015. 10. 6.

주 문

1. 피고 미합중국인 A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3.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미합중국 법인 비지네스크레딧매니지먼트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미합중국인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미합중국인 A이, 원고와 피고 미합중국 법인 비지네스크레딧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미합중국인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피고 미합중국 법인 비지네스크레딧매니지먼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1. 7. 28.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8. 23. 접수 제13036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미합중국인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수출자들과 수입자들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환어음 매입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정을 체결하였고, 수입자들의 수출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수출환어음 매입금융기관에 아래 사고금액 중 미화 2,479,984.61달러(원화 2,736,690,538원)를 대위변제한 후 수출자 및 매입은행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유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1	제트로전자 주식회사	PROAM ENTERPRISE INC	700,000	699,725.36	2011. 2. 17.2011. 3. 10.	777,458,903
2	주식회사 여명엔터프라이즈	PROAM ENTERPRISE INC	400,000	399,664.00	2011. 3. 29.	445,225,696
3	시스텍전자 주식회사	PROAM ENTERPRISE INC	500,000	499,988.00	2011. 5. 4.2011. 6. 2.	532,193,572
4	제이씨테크원 주식회사	PROAM ENTERPRISE INC	200,000	200,000.00	2011. 3. 10.2011. 4. 1.	220,653,393
5	주식회사 여명엔터프라이즈	WIZE SYSTEM INC	500,000	499,900.00	2011. 2. 24.2011. 3. 24.	561,939,500
6	에치디프로 주식회사	WIZE SYSTEM INC	200,000	183,951.50	2011. 4. 21.	199,219,474
합계	2,500,000	2,483,228.86		2,736,690,538		

(2) 원고는 수출자 주식회사 비제이파워가 수입자 PROAM ENTERPRISE INC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환어음 매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할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단기수출보험증권을 발행하였고, 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미지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사고금액 미화 199,980달러(원화 214,778,520원)를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3) 피고 A은 2011. 3. 7. 위 수입자들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단기수출보험에 의한 구상채무 전액을 인정하고, 수입자들이 원고와 체결한 분할상환약정에 기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수입자들과 피고 A으로부터 65,512,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구상금채권은 2,885,957,058원{= 2,951,469,058원(= 2,736,690,538원 + 214,778,520원) - 65,512,000원}이 남았다.

(5)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중 일부로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1.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23.경 피고 회사에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고,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보가등기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갑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0. 2. 7.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완료 후 피고 회사의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A이 2010. 11. 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7. 28.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의 원인인 가등기합의는 수입자들 및 피고 A이 분할상환약정에 의한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1. 5.경 이전에 있었음이 인정되며, 위 가등기합의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 A이 피고 회사와 가등기합의 및 담보가등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은희

판사최다은

판사김준혁

별지